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30 \_ 2017년 12월

**이 사람의 향기 I**

“장애인이 편한 사회는 누구에게나 편한 사회”  
홍서운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대표

**포커스 I**

서울특별시 행정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기회 보장이 필요하다.  
2017년 광역 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분석

**이슈포착 I**

아시아 태평양 여성인권 운동 속으로, 장애여성 리더들 모이다.

## 연석경사로 효과



---

1970년대 미국 버클리시, 덴버시 등에서 장애인들이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연석)을 해머로 깨부수어 버렸다. (왼쪽 사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저항이었다. 당시 장애인들이 깨부순 연석 덩어리가 미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오른쪽 사진) 이렇게 하여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 연석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경사로가 설치된 덕분에 오늘날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유모차,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케리어, 리어카 등 바퀴달린 것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편익을 위한 조치가 결국 모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현상을 ‘연석경사로 효과(curb cut effect)’라고 한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해진다”는 말이다.

---

#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30 \_ 2017년 12월

## CONTENTS

- |             |  |
|-------------|--|
| 이미지 단상      | 연석경사로 효과                                       |
| 02 편집자 편지   | 무술년에도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 04 칼럼       | 장애인고용의 문제, 현재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
| 06 의정돌보기    | 장애인 당사자가 바라는 의정활동                              |
| 22 이 사람의 향기 | “장애인이 편한 사회는 누구에게나 편한 사회”<br>홍서윤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대표 |
| 30 포커스1     | 서울특별시 행정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 41 포커스2     | 2017년 광역 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분석                        |
| 47 이슈포착     | 아시아 태평양 여성인권 운동 속으로, 장애여성 리더들 모이다.             |
| 52 생활속 모니터링 | 장애인은 고속버스를 탈 수 없다?                             |
| 56 영화평      | 친밀함 속에 포착된 극적인 순간들<br>- 류미례 (다큐멘터리 감독)         |
| 60 포럼은 지금   |  |

## 무술년에도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서울에는 함박눈이 펄펄 내립니다.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들어 있을 아프고 슬프고 고달픈 이야기들이 하얗게 덮이고, 반갑고 기쁘고 정겨운 일들은 환하게 되살아났으면 합니다.

정유년 마지막 <모니터링 리포트> 지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호 <칼럼>은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의 글을 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일자리 정책에 중증 장애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 소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부담금 제도를 전면 혁신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사람의 향기>는 흥서운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대표를 만났습니다. 흥 대표는 KBS 장애인 앵커로 활약했고 현재는 휠체어를 타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 소동위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장애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흥 대표는 여행과 관광에서 장애인도 소비자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장애인이 편한 사회는 누구에게나 편한 사회”라고 강조합니다.

<포커스 1>은 지방정부의 각종 행정위원회가 장애인 등 소수자 위원을 배려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쉽게 예상하듯, 당연히 그런 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 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치행정에서의 ‘장애 주류화’를 문제 삼습니다.

<포커스 2>는 올해 광역자치단체 장애 관련 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장애인 예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장애정책이 복지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이번 호 <이슈포착>은 모처럼 국제 이슈를 조명합니다.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가 ‘제3차 아시아 태평양 페미니스트 포럼’에 참가하고 나서 후기를 보내주어서 지면에 실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분노, 희망,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장애여성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토의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정을 쌓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모니터링 리포트>를 마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돌이켜보면 늘 부족한 구석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에는 디자인, 판형, 지면 구성을 새롭게 하여 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독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모니터링 리포트>를 사랑해 주신 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해 주어 우리 센터의 조사와 연구의 밑거름을 제공해주신 전국의 모니터단원들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센터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단원들의 활동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내년에도 좋은 파트너십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12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윤삼호

## 장애인고용의 문제, 현재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익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부모단체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개 확보와 최저임금 장애인 제외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개혁 등 총 3대 요구안 수용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상태에 돌입했다.

공단이 설립된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의무기업이 상시노동자 300인에서 50인으로 확대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장애인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2,260명 정도로 크게 증가했으나, 그 이후 중증장애 2배수인정제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장애인노동자는 연평균 7,794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더 나아가 최근 3년간은 연평균 4,886명에 머무르면서 점점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려울 것임이 공단자료를 통해 현실적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 공단설립 당시부터 의무고용제를 채택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장애인을 실제적으로 기업에 많이 취업시키기 위함이지, 지금처럼 기업으로부터 (미)고용부담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남은 (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렇듯 현재 기로에선 장애인고용의 문제를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하여 강력한 개혁이 필요해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에 있어서 경증장애인은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현재 고용차별이 심해 어떤 보조기 기라도 갖게 되면 사실상 고용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징벌조항을 강력하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중증장애인에게는 현재의 의무고용률로 해결하지는 제안을 한다.

둘째, 우리나라 30대 대기업들의 (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차등화 적용을 언급하려고 한다.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민간의 중소기업과 30대 대기업은 다르게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2017년 부담기초액이 812,000~1,352,230원 볼 때,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30대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및 30대 외 민간기업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담기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30대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거의 다 고용해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부담기초액을 160%~30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대기업 초봉이

300만 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기초액이 최상 300%는 우리 장애계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2017년 약 530억 정도인데, 이 기금을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를 쓰고 일하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일반회계가 아니고 아직도 (미)고용부담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금액이 진정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에 써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단내부의 획기적 개혁이 반드시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최근 몇 년 동안 저의 계속적 주장이었던 사회연대고용제도란 공단이 적립한 총 기금에서 일부를 사용하여 중증장애인 각각의 고용주체들인 정부, 민간기업,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비영리부문의 대체노동영역(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하는 제도로서, 이 예산은 2017년 (미)고용부담금의 전체규모 1,201,710백 만 원에서 15%~20%인 1,800~2,400억 정도를 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만약 기금이 언젠가 고갈이 나면, 그때 정부예산에서 마련하여 최저임금이상(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150~200만원을 설정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직접예산으로 편성한다면, 중증장애인 10,000여 명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25년 이상 의무고용제를 실시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생산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선진국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공단이 예치하는 여유자금(2017년 거둬들이는 총 기금(1조 2000억원)의 약 71%를 현재 여유자금 임)의 일부를 확보하여, 장애인의 직무환경을 바꿔주고 보조공학을 지원해주며, 근로지원서비스를 확대·지원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직장적응과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고용에서 하고 있는 직무지도원 파견기간을 장애정도에 따라 5년에서 평생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80만 원 정도의 생산력을 내는 근로작업시설은 고용노동부로 가져와서 중증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있게 하기 위한 기금지원 및 대기업으로부터의 연계고용제 강화방안모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각종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외치면서 들어선 새로운 정부는 과연 장애인고용 부분에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도 앞으로 시켜볼 생각이다.

## 장애인 당사자가 바라는 의정활동

김용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내년이면 지방자치 민선 7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단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민선 6기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현안 논의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 관점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 선거 시점에서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민선 6기 단체장과 의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당사자 모니터링은 그 고유 목적이 실효적인 정책 수립과 개선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와 당사자의 이해가 맞닿아 있습니다. 지자체가 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 회의록을 들여다보는 것은 가장 일반화된 모니터링 형태입니다. 관심분야 중앙정부 정책의 자치단체 이행이나 자치사무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및 정책방향, 예산편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정발언 평가 기준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장애 관련 사업이나 현안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 장애관련 의정발언도 고용, 교육, 권익옹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접근·이동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의정모니터링을 수행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주관적인 관점에서 우수발언과 황당발언을 추천하고 그 이유를 적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추천 이유를 살펴보면 특정 지역현안이나 관심분야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장애이슈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 방법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장애인 자립생활 증진 정책에 부합하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둘째, 객관적 통계자료와 실태조사,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앞서 두 가지 모두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에 기반한 서비스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를 고려한 서비스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발언 추천사유는 같은 기준으로 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단원들이 추천한 우수발언은 70여 개에 이릅니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모든 분야 이슈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정돋보기 코너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것들 중 대표적인 발언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추천 사유		대표적 사례
당사자 시각 반영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에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시설화 · 자립생활정책방향 등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를 지자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li> <li>•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장애인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방안 제시</li> <li>•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촉구</li> </ul>
	객관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 및 관내 공공기관의 법적 기준 충족을 넘어선 적극적 의지 강조</li> <li>• 장애인사업장의 장애인 임금실태 파악을 기초로 개선 요구</li> <li>•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기반에 중요한 요소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동/접근권 관련 실태, 현안을 다루고 개선 요구</li> </ul>

## 우수발언 사례

A. 지역 장애인단체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의원의 발언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국주영 의원은 관내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전라북도 장애인정책을 탈시설과 자립생활 증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339회 본회의 제1차 5분 자유발언

국주영 의원 발언 中(2017. 01. 09)

**국주영은 의원** 지난 2016년 10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도청 앞에서는 장애인들의 농성이 있었습니다. 전북 장애인 인권보장 공동투쟁본부가 제시한 정책요구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탈시설화·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상설 민관합동 감사팀 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7개 영역 20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라북도에 소재한 법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전라북도 법인/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 부정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민관합동 감사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7조제4항에는 “인권센터 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인권향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정책이 그 출발점입니다. 전라북도에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대부분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미지원 4개소에 대해서도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소규모 거주시설 확대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호적 태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접근으로 기조가 변경된 것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정책방향이 필요하며 이는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생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5개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전환 정보고지 의무화 둘째,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셋째,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넷째,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 확대 등입니다. 중앙정부의 추진계획과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을 철저히 검토해서 장애인의 고용과 생활안정, 사회활동 참여지원,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탈시설화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이동권이 보



장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실적을 보면 시내버스 법정대수가 247대인데 2016년까지 누계 195대로 78.9%에 불과합니다. 각 시·군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확보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활동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아무썸튼 전라북도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 법령에 근거해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장애인단체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장애인 단체와 협력을 통해 시설과 가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247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

유진의 의원 발언 중(2016. 11. 22)

- 유진의 의원** 이은희 국장님, 장애인쉼터가 언제 개원됐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1월 11일 날 했습니다.  
(중략)
- 유진의 의원** 그러면 지금 직원은 한 명 있고 이용자는 없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모집할 계획입니까? 그냥 경찰에서나 요구가 있을 때만 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광고해서 할 건지, 들어오면 있고 안 들어오면 그냥 없을 건지, 어떻게 생각…….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본적으로 기관 간의 연계는, 저희가 홍보는 관계 기관끼리 해야 될 건데, 이것이 '15년부터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른 시도의 것을 봐서 세부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자세한 지침은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는 운영규정을 봐서 하고 있는데 우선 관련 기관끼리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진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이용대상, 이용절차, 이용 프로그램,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 홍보하겠다는 거, 이용제한, 이용종료, 이용기간 이런 상당히 기본적인 것만 오고 당장 필요한 인권 침해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내용이 전혀 없어서 과연

이게, 직원은 한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한 명도 없는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중략)

그러면 장애인쉼터와 관련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내년에 할 거잖아요? 이거와 잘 연계가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 학대나 인권 침해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발견했을 때 장애인쉼터에 연결해서 장애인을 분리해서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의원 그러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언제 개원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국비가 내시는 왔는데 하반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가 내년 상반기에 하고 지방에는 하반기 이런 수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의 의원 장애인인권센터나 권익옹호기관은 국가에서 전에서부터 운영되었죠, 2015년도에 타 시도는?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쉼터가 그렇고 권익옹호기관은 이제야 나오는 겁니다.

유진의 의원 우리 장애인차별 조례에 보면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 했다가 본 위원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도가 보면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만 시작하는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정에서 녹장을 부려서 사업 추진이 더딘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권익옹호기관을 빨리 공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장애인쉼터가 어쨌든 제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애인인권쉼터에 시설입소자나 개인들이 인권 침해로 장애인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성폭행인 경우에는 성폭행 관련된 그런 터가 있고 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쉼터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쉼터의 주 이용원이 장애인 가족, 폭력 피해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폭력이 아니어도 학대나 인권 피해가 있을 때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가 없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타 기관하고 연계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권익옹호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상담소, 장애인인권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곳에 오는 대상자나 피해자들이 장애인쉼터로 연결해서 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C.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는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시설운영 예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 근거 부재가 아니라 집행의지의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이호근 의원은 시설운영자들에게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고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335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이호근 의원 발언 中(2016. 07. 13)

**이호근 의원** 57쪽 유형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있어요. 전반기에 예산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전반기 예산이 814억2,700만원이었는데 지금 847억3,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증가된 내용이.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 추경에서 변경된 것을 이번 계획서에도 반영했기 때문에…….  
(중략)

**이호근 의원**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근자에 들어서 아까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어디다가 그것을 말을 해서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달을 못하는 체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상담을 해서 정확히 원인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상담사들이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차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번에 아마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 힘없이 살아가는 아까 여성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노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에 대해서 특히 개인은 물론 막론하거니와 시설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랬죠. 최고 강한 거. 하셨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 원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2차가 시설장 조치하고 그런데요 이미 시설장은 조치했고 앞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 민간대책협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법인에서부터 시설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아보자. 그래서 아예 소유권 자체를 법인에서 떼고 제대로 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더 낫다 지금 거기까지도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근 의원** 그런 부분까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관계된 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도덕적인 무장이 돼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일을 하면 밥 먹고 사는 직업적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 이번에 시설장은 장애인 인권사업에 힘을 많이 기울이시는 분으로 시설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호근 의원** 그렇게 좀 다른 기관도 해주셔야 돼요.

D.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절대적 평등'과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피해자는 영원히 평등기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과장 자리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대리, 사원 경력을 가질 기회가 부족한 탓에 장애인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있더라도 극소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에 있어 현실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 준수를 넘어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민간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47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윤춘광 의원 발언 중(2016. 11. 29)

**윤춘광 의원** 장애인 고용률도 낮고 장애 학생 취업률도 낮고. 지금 벌금 얼마씩 냅니까? 올해 벌금 예산 얼마나 책정됐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올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윤춘광 의원** 1억 8000만 원, 돈도 아니죠? 그거. 장애인이 없어서 못 쓰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우리가 장애인을 모집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윤춘광 의원** 그러면 제주도가 건강의 섬이라서 장애인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직종이 장애인이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직종이어서 그랬던 것으로 해서 내년에 채용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같이 채용하지 않고…….

**윤춘광 의원** 타 시도는 장애인이 많아서 110%까지 채용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장애인 구성이 다 나와 있잖아요. 구성비가! 벌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을 교육청에서, 행정에서 따듯이 보듬으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같이 살아가는 자세!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한시적으로 장애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시적인 것보다 이왕 채

용하면 끝까지 함께 보듬어갈 수 있는 채용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듬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채용하면 무기계약직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채용 비율이 낮아졌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49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폐회중)

안창남 의원 발언 中(2017. 03. 31)

안창남 의원

제주도는 산업구조상 3차 산업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서비스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50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사실은 장애인들이 취업할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개발공사의 장애인채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정자 오경수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3%에서 3.2%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명 정도 채용해서 3.2% 규정에 맞춰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잘 알고 계시는데요. 2010년부터는 3% 이상, 또 올해부터는 3.2% 이상 채용하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개발공사는 채용률이 3.21%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기준은 채웠지만 그래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공익적 측면에서 장애인들 채용비율을 보다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정자 오경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제주도 기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3.2%를 맞추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공고 중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장애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처럼 확대할 것이고요. 특히 제주도 출신으로 신입사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청년일자리 또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잘 보듬을 것인가도 하나의 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이라고 보고 제가 잘 살피서 가능하면 법적으로 3.2% 넘게 하는 것을, 딱 지키려고만 노력하지 않고 조금 더 중시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참고로 서울시는 일정 부분에서는 장애인 채용을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참고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주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정자 오경수

고견 감사드립니다.

표.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 노동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강원도의회 구자열 의원은 도내 장애인보호사업장 훈련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2016년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구자열 의원 발언 中(2016. 11. 10)

구자열 의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의 취약한 근로실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 달 월급이 9,000원이라면, 9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도 아니고 9,000원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내에 장애인근로사업장,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해 가지고 총 33개가 있는데,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춘천, 원주, 태백, 홍천 이렇게 네 군데에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9개가 있습니다. (중략)

아무리 훈련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월급을 9,000원 준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 제가 지침을 가지고 왔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고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아요. 최저임금의 40%라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한 달 최저임금이 126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의 40%라면 50만 4,000원이예요. 그리고 30%라면 37만 8,000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는 작업장이 대다수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국장님의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장애인 처우개선에 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해 가지고 있는데 33개소에 71억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이게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느냐.

사실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이 있는 이유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단계, 그래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원들은 인건비로 62억 정도를 대비와 시·군비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가 되어야 될 장애인들에게는 결국 9,000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얼마나 모순된 얘기냐 이거죠.

(중략)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9,000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근로사업장은 현재 저희가 춘천, 원주, 태백, 홍천 4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이 108만 원 정도로……. (중략)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9개소인데 도 운영이 2개소이고 시·군 운영이 27개소가 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이 41만 6,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000 원 받는 것은 저희가…….

**구자열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로장애인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규정을 말씀 드렸잖아요. 전체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에게는 최저임금의 40%를 지급하고 1인당 월 평균 금액은 최저임금의 30% 이상을 주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평균 지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군데를 살펴보니 최저임금의 30% 이하 수준이 많더라 이거예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훈련이 좀 안 되는…….

**구자열 의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거나 우리 직원분들을 질타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단순 반복하는 일이에요. 무슨 창의적이거나 창조적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그분들 일하는 수준을 보면 달인 수준이에요. 봉지를 접는다든지 박스를 접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달인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9,000원, 많게는 9만 원,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중략)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저도 작업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작업한 생산품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1인당 작업하는 양도 상당히 느리게 이렇게…….

F. 장애인 관광, 문화예술 향유는 이동/접근권, 정보접근 개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영화관람이 어려운 환경은 문화예술 향유권과 이동/접근권 이슈가 혼재된 형태이니까요. 또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전시기회 등을 갖기는 쉽지않은 환경입니다. 관광명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식당이나 화장실을 안내하는 앱을 지원하는 것도 편의시설 확대를 유도할 수 있고,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전라남도의회 308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박철홍 의원 발언 중(2016. 07. 11)

**박철홍 의원**

23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이제 끝난 것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일단 위원님께서 이전에 지적을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일에 업체하고

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 우리 도가 간담회를 추진해서 그 프로그램 앱이 다운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하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하고 또 사용상 어떤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주식회사 가온시스템에 얘기를 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중략)

**박철홍 의원**

업데이트도 중요하지만 업그레이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현재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정보를 담아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있는 유명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중략) 유명 관광지,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이런 부분들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조사되어서 수록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일단 편의시설 정보를 한 3,000개 정도 탑재할 목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해 가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 의원**

제가 이 업그레이드를 조사해야 된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어디에 무엇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뜻도 되지만 어디어디에 그런 것이 없으므로 만들어라, 그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라는 간접적인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앱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 앱을 보고 관광을 오라는 그런 이유가 그런 뜻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 의원**

그 아래 보면 종합매뉴얼은 제작이 될 것 같고요, 음식점 등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 50개소가 됩니까? 23페이지 제일 아래…….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이것은 전번에 말씀드렸던 이동식 휠체어가 식당 앞에 이동식으로 설치가 되어서 휠체어가 계단을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철홍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없는 데를 만들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중략)

원래 제가 모바일 앱을 만들 때 도정질문 했을 때 했던 얘기가 앱도 있지만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휠체어를 내려야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거든요. 휠체어를 내리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기왕에 이용약자 편의시설을 만들었으면 '여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된 곳입니다.' 하는 마크 같은 것을 붙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업소 앞이에요?

**박철홍 의원** 그렇죠. 업소 앞에다가 장애인 휠체어 준수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붙여놔면 밖에서 휠체어를 내리지 않아도 “여기 들어가도 되겠네.”라는 뜻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그 부분은 어차피 업소하고 같이 설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전라북도의회 2016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최은희 의원 발언 中(2016. 11. 10)

**최은희 의원** 우리 장애인 미술작가들은 왜 한 번도 전시회를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 장애인 미술작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도청 갤러리에서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중략) 서울 같은 경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신청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의원** 인사동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의원**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비장애인은 열 번을 치렀으면 오십 번을 치렀으면 우리 장애인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줘야죠, 등록작가 수가 많지가 않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 일단은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는 신청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최은희 의원** 한 번이라도 우리 장애인 작가들에게 ‘인사동 갤러리에 전시 한번 하십시오’ 하고 응해본 적 있습니까? (중략) 좀더 운용의 마인드를 살리셔가지고 모든 전복 작가들, 잘사는 사람들, 가진 자와 못 가진자의 그런 차이, 무명작가의 설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인사동 갤러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운용의 묘를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의회 255회 본회의 제3차 회의

김남희 의원 발언 中(2016. 07. 20)

김남희 의원

좋은 곳을 여행하고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물리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관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약자라고 하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은 신체적인 여러 가지 제약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행동을 옮기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부라고 생각하는 관광약자가 우리 사회에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령화로 인해 지금도 그 숫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잠재적 관광약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광약자의 눈으로 살펴본 부산시 관광시설 현상상황을 점검하고 관광정책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중략)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통해서 부산 곳곳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국의 업무상 관광약자라는 이런 단어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질문편의상 교통약자를 관광약자로 칭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고 관광지 또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이 어떠한지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교통국장 홍기호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두리발을 비롯해서 관광택시 이렇게 많이 운행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시 전역에 관한 보행편의, 이동편의에 대한 점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에 관한 접근성 부분 이 부분은 지금 교통국 차원에서는 조금 집중하지 못한 점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남희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실제로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약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산 최대의 관문인 김해공항의 모습입니다. 김해공항은 2015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문자서비스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상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시내로 나가는 주요 교통수단인 공항리무진은 장애인석이 없으며 탑승보조 시설마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약자의 이용률 또한 매우 낮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구역안내 또는 장애인운전자가 쉽게 장애인주차 구역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관광객의 관문인 부산역 열차승강장의 모습입니다. 열차정차 시 일반



인 승객들만 수용하기에도 사실은 통로가 매우 좁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강장 통로가 경사져 있어서 휠체어장애인은 혼자서 이동이 매우 불가능합니다. 노약자 보행안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은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입구입니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부산역 2층 대합실의 관광안내소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안내소가 부산역여행센터, 렛츠코레일여행센터 그리고 관광안내소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관광객이 매우 혼란스러워 합니다. 게다가 안내데스크 높이가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아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안내소의 출입구에 설치된 경사로가 매우 부실하고 또 내부공간이 좁아서 휠체어는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부산역 역시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승강장을 이용하기 위한 경사로가 가로수에 막혀서 휠체어의 진·출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산역 지하철을 타기 위한 엘리베이터의 위치는 부산역 정문에서 200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마저도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역과 김해공항은 부산의 얼굴인데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홍기호

예. 의원님 아주 생생하게 현장을 보여주신 걸 보고 저도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역에 엘리베이터 위치관계를 참 많이 고민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좀 멀리 있는 거리상으로 멀고 정말 좀 가까운 데 할 수, 참 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많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남희 의원

그래서 물론 이런 시설을 준공할 때는 당연히 점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장애인과 같은 관광약자에 대해서 이후에 정기점검이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함께 이렇게 점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통국장 홍기호

예.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교통국 이전에 우리 부산역이라든지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기관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번에도 저희 부산역도 그렇고 김해공항도 그렇고 저희 교통국 소관인데 한번 해당기관하고 또 우리 장애인담당부서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일제히 점검을 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G.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요양서비스로 전환이 되어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시급한 사안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259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김남희 의원 발언 중(2017. 01. 16)

김남희 의원

계획서 18페이지 보니까 부산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실 계획이십니다.

부산시의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점검과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노인 이용현황과 분석 그리고 요양서비스에 대한 그런 신청이유 또 근거신청 이러한 부분도 꼭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곳에서 벗어나서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때와 배당되었던 시간 점수나 이런 게 많이 인증점수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당사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노인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떠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장 초의수

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효율성 중심으로 해서 한때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요양보호 체계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장애인계에서 일단 반대를 했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도 나름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개 장애인들이 노화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재는 연구 수립에 대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수립의 과정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념을 해서 현재는 아마 요양보호에 대한 2차 통계를 중심으로 아마 분석을 하지만 더 좀 세밀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장애인의 노화와 또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장애특수성들을 반영한 그러한 연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마치며

장애인당사자가 추천한 우수발언 수와 내용의 이면에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가 공감하고 지향하는 바를 지자체 정책에 전달하는 의정발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천된 우수발언 수는 전체 수집 발언 수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둘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증진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들을 탈시설 및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연계해 인식하는 지자체도 드뭅니다. 셋째, 의원들의 발언이 여전히 장애당사자의 시각

반영은 물론, 지역의 특성 고려, 실천 가능성, 구체성, 정책방향 제시 등에 있어 미흡하다는 사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수집된 발언들을 이슈별로 분류하고 빈도를 측정해 지역별 장애인정책 추진 트렌드 분석과 취약분야를 도출해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정책 개선, 우수의원 시상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가 모여 조례제정과 예산편성, 행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 사무를 최종 결정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의정모니터링 결과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의정 활동이 보다 나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애인이 편한 사회는 누구에게나 편한 사회”

홍서운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대표

정리 함솔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인터뷰 내내 환하게 웃고 있는 홍서운 대표

햇살 좋은 날, 서울혁신파크에서 홍서운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대표를 만났다. 홍 대표는 유럽 여행 수기를 책으로 출간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여행은 그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을 떨리게 한다. 장애 당사자 여행가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

여행을 통해 '일탈성'을 경험할 때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 속에서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여행의 가장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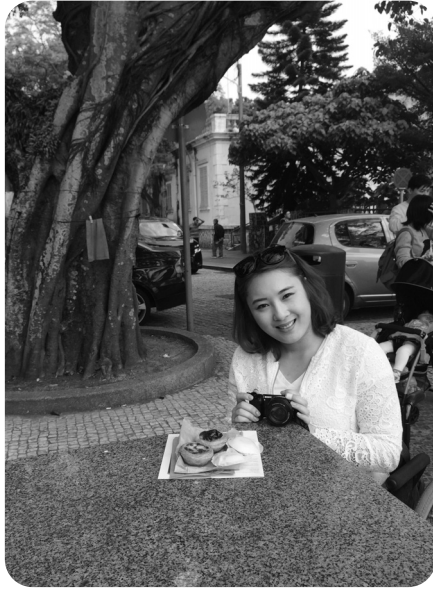
## “장애인 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더라.”

홍 대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애인 여행작가이다.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여행을 하고 글을 쓴다. 그가 쓴 책을 보면, “휠체어로 누빈 7개 나라 25개 도시”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유럽 여행을 하는 도중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는 나라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특히, 그 중에 긍정적인 경험이 궁금했다.

독일 뮌헨에서 옥토버 페스트(세계3대맥주축제) 퍼레이드를 보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찮게 어떤 여성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성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휠체어가 있다는 것을 알리자 사람들이 저를 맨 앞줄로 보내주더군요. 가장 앞에서 퍼레이드를 감상하는 것도 모자라서 퍼레이드 안전을 담당하던 경찰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유도차 끄는 사람, 휠체어 타는 사람, 아이들을 부르더군요. 해서 더 특별한 장소에서 퍼레이드를 볼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제 앞에 서서 제 시야를 방해하던 관람객들과 사뭇 다른 행동이라 놀라긴 했어요. 어쩌면 그런 것이 선진적인 장애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캠페인이나 인식개선을 통해서 문화예술 관람 에티켓은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법, 혹시 여행 중 앞서 들었던 일화와는 반대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장애인 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차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또, 문화재나 역사 유물 등을 관람하는 오래된 도시는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편의시설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거의 모든 나라마다 호불호가 있었는데요. 선진국이고 아무리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라고해도 여전히



2% 부족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KTX나 공항의 휠체어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훨씬 편리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면에서는 1등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럴 땐 ‘빨리빨리’ 문화가 순기능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신체적 제약과 주변 환경이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장애’가 되었을 법하다. 흥 대 표, 그가 생각하는 장애인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장애인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라고 나와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장애를 극복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편함도 있고요. 하지만 장애가 없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 좀 더 많이 불편한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느끼는 불편에도 유사점이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유모차를 미는 아빠가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불편함도 유사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도 소비자로 대접받아야

장애인이 해외나 국내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기란 아직도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는 장애인의 여행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 또 장애 당사자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여행은 사실 두 개의 갈래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비자의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를 향유 할 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더 우

선시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지와 달리 문화와 관광은 산업 생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소비자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확립되어야 해요.

여전히 우리 사회 장애인의 고용률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소비를 하러 갔을 때 소비자의 역할을 다 한다면 산업과 시장은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의 영역에서는 '수급자', '이용자'라는 복지 언어보다는 '소비자'라는 경제 언어가 사용되었으면 해요. 저 역시 사회복지를 전공하였지만, 복지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복지적인 인식을 적용시키기란 무척 어려워요. 조심스럽지만, 문화관광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발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광객은 관광취약계층이 아니라 관광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관광을 소비하는 장애인', 듣기만 해도 멋진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모든 정책과 행위를 '복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인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장애인 관광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이 '관광복지팀'이 있다. 장애인을 관광 소비자로 인식하는 사례를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

장애인이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장애인 관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제주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는 장애인 관광객, 즉 소비를 하는 관광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기존에 몇 대 있던 핸드컨트롤러 장착 렌터카가 오히려 사라지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장애인 여행사 4곳이 운영되고 있고, 유모차와 카시트를 대여하는 일반 업체에서 전





동휠체어를 유료로 대여하고 있어요. 이는 장애인 같은 관광 소비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거기에 맞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소비가 늘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늘고 또 다양해집니다. 제주도 사례가 앞으로 숙소며 보다 많은 장애인 전문 여행 콘텐츠가 생겨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소비자가 왕이다”란 말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고, 그래서 이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이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소비를 하고 싶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문화향유의 권리를 적용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해요. 당연히 문화관광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과, 아직 초기단계라 산업의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도 소비자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캠페인과 교육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환경의 개선문제도 지금은 큰 틀에서만 고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별 없는 서비스 내용과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단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장애인이 소비자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수급자로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려면 여행지와 식당, 숙박업소 같은 시설의 접근성을 비롯하여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에게 물어보았다.

사실상 현재 관련한 법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존재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이행의 정도가 낮은 것이 문제인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광진흥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강제하고 규제하는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자발적으로 무장애 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예컨대, 채찍보다는 당근을 먼저 주는 형태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14년 「관광진흥법」에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와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가 추가되어 장애인 관광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 올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가 추가되어 관광차별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된다.



## “장애인이 편한 사회는 누구에게나 편한 사회”

홍서윤 대표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장애인으로서 유인한 소통위원으로서 그는 장애인 사회와 새 정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어떠한 계기로 국민인수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저를 보고 국민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저로서도 좋은 기회다 생각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장애 관련 이슈는 물론이고 농민, 청년, 여성, 청소년, 지역민들의 목소리까지 들어보면서 참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이전에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또 경청하지 않았더라면 들을 수 없었을 이야기까지 알게 되었어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들을 채택하면서 소통이란 무엇인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는 100일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소통위원으로 활동하느라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장애인 홍서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분야는 어디였을까?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었지만, 저는 자취생활 10년차다보니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성이자 청년이자 장애인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이슈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주거 이야기, 장애가 있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좁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집 값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는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는 지난 8월 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적용된 도시·건축 설계를 제도화하자고 촉구했는데, 그 중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들어보자.

장애인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는 집단이라는 대외적인 인식에서 조금 벗어나 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비장애인이거나 장애인과 크게 교류를 해보지 못한 시민들은 장애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몹시 드물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면서도 장애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배리어프리(barrier-free)와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정책을 도입하자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도입의 근거와 뿌리, 그러니까 디폴트값이 바로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장애인이 살기 편한 사회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살기 편한 사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이 다수의 국민에게 적용 가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디폴트값이 되고 아동, 어르신 등도 함께 적용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효과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그가 하고 있는 장애인 여행 활동과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 이런 일을 장애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개인적인 활동으로 여기는 걸까?

사실 장애운동을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운동이라고 한다면 운동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을 장애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애인들이 사회에 더 재밌고 흥미롭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ator,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행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개개인의 장애인 당사자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여행의 참의미나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 할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특별하게 목소리를 내야할 공간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이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책을 쓰는 것 또한 그런 과정 중 하나이고, 저 이 외에도 여행을 경험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애는 비정상이 아니라 불편함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문제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정치 참여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생활 속에서 가능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잘 하려고 해요.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 관광이 더 보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려고 해요. 더불어 장애청년과 장애여성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볼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려고 해요. 저희 은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Disabled is not abnormal, it’s just uncomfortableness. 장애는 비정상이 아니라 불편함일 뿐이다”.

홍서운 대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KBS 장애 여성 앵커를 맡았다. 그 뒤로 장애인여행 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하루하루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장애 여성 당사자의 눈으로 보는 장애인 관광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여성, 청년, 장애인이라는 3가지 이슈를 중층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낀 점도 들어보았다. 최근에는 ‘배리어프리 서포터즈’(건전한 숙박 이용 문화 확산과 우수 숙소 발굴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숙박 제휴 점검단) 모집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전진하려는 그의 모습에서 당찬 장애 여성의 면모를 볼 수 있어서 인터뷰 내내 즐거웠다.

## 서울특별시 행정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기회 보장이 필요하다.

글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서울시 행정위원회 중 하나인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답게 위원들 중에는 휠체어 이용자도 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만을 가리키고 지방의회에 소속된 위원회는 여기서 제외된다. 이 위원회는 지방정부가 특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 및 조정하여 집단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행정위원회를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한다. 이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당사자, 지방의회 의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행정위원회는 모두 21,729개다. 그 중 설치근거를 조례에 둔 것이 6,878개이고 규칙에 둔 것은 457개다.

이 글은 서울시 행정위원회 현황을 살펴보고 각종 위원회가 그 구성에서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확인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행정위원회에 포함시키기 위한 자치법규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 1. 서울시 행정위원회 현황

서울시가 작성한 ‘2016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7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 계획’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가 설치한 행정위원회는 모두 185개이다. 이를 기능별, 설치근거별,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능별(성격별)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듯이 심의기능 위원회가 144개, 자문기능 위원회가 30개, 의결기능 위원회가 11개이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서울시 행정위원회가 의결기능이 매우 약하고 대부분 심의와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 자치행정은 철저하게 독임제(獨任制)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합의제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표 1> 서울시 행정위원회 기능별 분류

(단위: 개)

총계	심의	자문	의결
185	144	3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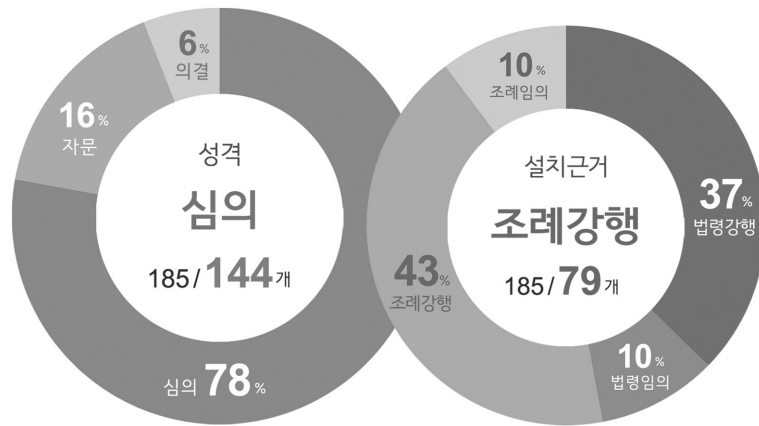
그리고 설치근거별로 분류하면, <표 2>에서 보듯이 법령에 의한 강행 설치가 69개, 법령에 의한 임의 설치가 18개, 조례에 의한 강행 설치가 79개, 조례에 의한 임의 설치가 19개로 확인되었다. 다행스럽게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행정위원회가 열 중 여덟이다. 강행설치가 임의설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때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자의적 결정을 상당 부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표 2> 서울시 행정위원회 설치근거별 분류

(단위: 개)

총계	법령강행	법령임의	조례강행	조례임의
185	69	18	79	19

서울시 행정위원회를 기능별(성격별), 설치근거별로 분류하여 전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서울시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

한편, 서울시 소관부서별로 행정위원회를 분류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기획조정실이 관장하는 행정위원회가 20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제진흥본부 16개, 행정국 13개, 서울혁신기획관 12개 순으로 많다.

〈표 3〉 서울시 행정위원회 소관부서별 분류

(단위: 개)

총계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본부	주택건축국	평생교육정책관	기후환경본부	도시계획국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도시교통본부	물순환안전국	여성가족정책실	재무국
185	20	16	12	13	9	8	8	8	7	7	7	7	6	6	6	5
	시민소통기획관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감사위원회	관광체육국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공간개선탄	도시재생본부	지역발전본부	푸른도시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보기획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사업소	
	4	4	3	2	2	2	2	2	2	2	1	1	2	2	9	

## 2. 서울시 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한편, 서울시의 '2016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7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 계획'을 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가 설치한 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3,911명이다. 이를 위원의 직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별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듯이 위촉직 3,375명, 당연직 430명, 임명직 106명 순이다. 당연직이나 임명직에 비해 위촉직 위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서 어느 정도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위촉직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그 자격 요건이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표 4〉 서울시 행정위원회 위원의 직별 분류

(단위: 명)

총계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3,911	3,375	430	106



또 위촉위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듯이 전체 위촉위원 3,375명 중 전문가 1,033명, 학계 834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39명, 공공기관 종사자 282명, 시의원 216명, 민간기업 직원 209명, 기타 402명이다. 전문가와 학계의 위원이 1,867명(55.3%)으로 절반이 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399명(11.8%)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 행정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지 못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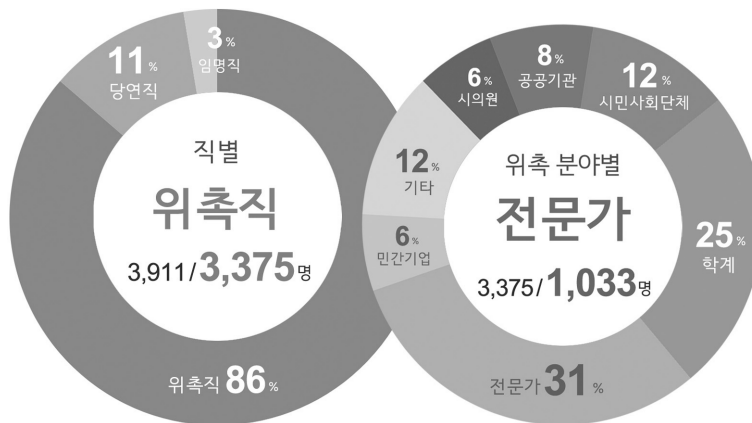
<표 5> 서울시 행정위원회 위촉위원의 분야별 분류

(단위: 명)

총계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시의원	민간기업	기타
3,375	1,033	834	399	282	216	209	402

서울시 행정위원회 위원을 직별, 분야별로 분류하여 전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한편, 서울시 행정위원회 위촉위원 3,375명 중 소수자의 비율은 <표 6>에서 보듯이 여성 1,302명(38.6%), 장애인 52명(1.5%)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행정위원 열 중 넷 정도가 여성이지만 장애인 위원은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권이 크게 신장되어 여성의 행정위원회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장애인 참여율은 그 인구비율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행정에서 장애인들이 심각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서울시 행정위원회 소수자 위원의 분야별 분류

(단위: 명)

여성 위촉위원	장애인 위촉위원	총위촉위원 수
1,302(38.6%)	52(1.5%)	3,375

### 3. 서울시 행정위원회 조례에서 찾은 소수자 참여보장 규정들

지방행정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 행정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의사결정구조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위원회에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라고 볼 수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일부 자치법규에서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생겨나는 추세여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를 테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 제7조 2항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럼, 서울시가 제정한 행정위원회 관련 자치법규에도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항이 있을까?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서울시 행정위원회 185개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위원회 구성이 어떤지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소수계층을 위촉위원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는 모두 36개(19.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나마도 여성을 할당하는 자치법규 30개(16.2%)를 제외하면 장애인 등 다른 소수자를 배려하는 자치법규는 6개(3.2%)뿐이다. 아래 〈표 6〉은 서울시 행정위원회 자치법규 중 여성을 제외한 소수자 할당 규정들이다.

〈표 6〉 소수자(여성 제외) 참여보장 규정이 있는 서울시 행정위원회 관련 조례

위원회	설치 근거	관련 조항
장애인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장애인인권 증진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10조(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청소년 ④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51조(구성) ②위원은 공개모집을 한 후, 추천절차를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선정한다. 다만,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는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15조(위원회 구성) ③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⑤위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③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 4. 서울시 행정위원회는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서울시 행정위원회 관련 자치법규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들도 꽤 있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당사자들이 그런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조례들이 많다. 그 중 7개 조례를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중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성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2016년 7월부터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보면, 위원 요건이 다음과 같다.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서울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서울시 인권위원. 그런데 현재 재직 중인 감정노동자를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노동조합에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기관 종사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원 자격을 제한한다. 여기에도 당연히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성평등위원회’의 근거 법규인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7조 제3항은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조항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재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촉위원 구성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위원 구성에서 ‘양성 동수 원칙’을 기재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외국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들 소수자의 양성 평등 문제에는 다른 차원의 쟁점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근거 법규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연대 구성에서 여성 위촉위원의 비율을 특정하지 않는다. 위원회 설립의 취지가 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과 여성의 보호와 지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 위원의 수가 적어도 과반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외국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소수자 여성이 당하는 폭력의 형태와 양상이 다수자 여성의 그것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권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5조는 위원의 성별과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른 위원회보다 특별히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주요 대상인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

정을 조례에 추가해야 한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3조는 위촉위원 자격 요건에 청소년 당사자를 배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앞서 살펴본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근거 조례들을 보면, 위원 구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역시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끝으로,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역시 성별과 소수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위원회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립된 조직인 만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노인, 외국인주민,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촉위원으로 할당해야 한다.

이상의 개선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소수자의 행정위원회 참여보장을 위한 개선안

위원회	설치 근거	현행 조항	개선안(예시)
감정노동 종사자권 리보호위 원회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 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 한 조례	제18조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정부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18조 ③ 2. 감정노동 종사자를 포함하여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북한이탈 주민 지원지역 협의회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의 정착지원 에 관한 조례	제6조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행정1부시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행정1부시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시 자치구에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 5.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행정1부시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6. 북한이탈주민 대표

성평등 위원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 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구성) ① ... 다만, 위원 구 성은 양성 동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 정 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노인, 외국이주민, 성소 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 여야 한다.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③위원은 여성보 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 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 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 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기관 또는 시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③ ...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은 여성이 과반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 노인, 외국이주민, 성소 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 야 한다. 4.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학부모 단체
인권 위원회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5조(구성)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 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 서 위촉한다.	제15조(구성) ② ... 다만, 위원 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 어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노숙인 등 사 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 육성 위원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 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 ③ ...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 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 임위원회 위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 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구성) ③ ...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2. 청소년 단체를 포함하여 청 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 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 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희망온돌 시민기획 위원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 원에 관한 조 례	제6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민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대표할 만 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구성) ③ ... 다만,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 서는 아니 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노인, 외 국인주민, 노숙인 등 사회적 약 자를 대표하는 사람
---------------------	---	--	--

#### 4. 대변과 옹호를 넘어 당사자 참여로!

오늘날 지방자치에서 “민관협치(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서울시 같은 초거대도시가 직면한 다종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과 관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실패를 줄이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자치단체들이 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주민참여 행정을 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행정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확인하였다시피 행정위원회 구성이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 전문가 중심에서 탈피하여 당사자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류 시민뿐 아니라 소수자의 참여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행정위원회라는 좋은 하드웨어를 설치했다면 이 기구에 걸맞은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서울시가 설치한 185개 행정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원으로 할당하고, 대변자나 옹호자보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모든 주민의 공평한 참여기회 보장은 지방자치의 원칙이자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이다.

## 2017년 광역 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분석

글 김민정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예산정책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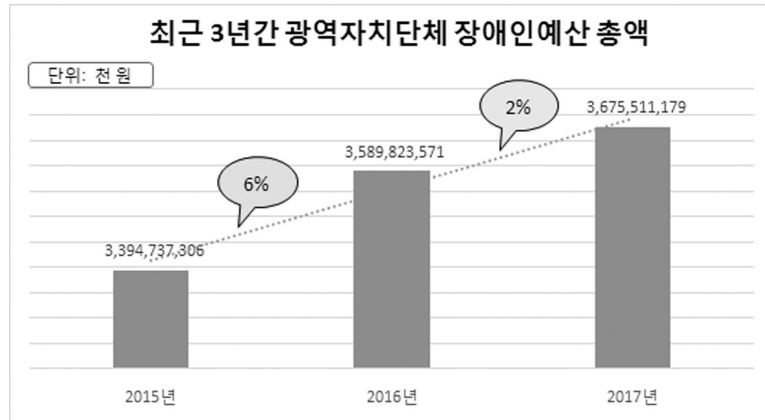
### 1. 장애인 정책 예산의 의의

예산이란 일정기간 세입과 세출의 예정서로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부여하는 재정동의권의 형식으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 분석에 못지않게,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정치적 합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합리성은 많은 경우 전년도 답습주의나 기득권 위주의 보수적 성격을 내포하며, 개혁과 변화에 대한 저항의 논리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미흡, 승자전취(The Winner Takes It All)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 등 신자유주의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예산정책모니터링센터가 매년 장애인 정책예산의 구조와 성격, 집행과정, 추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그 한계와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하는 이유이다. 이번 호에서는 2017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본예산에 나타난 장애인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 2. 2017년 광역 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

〈그림1〉



〈그림1〉의 그래프를 통해 최근 3년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 추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은 최근 3년 간 연 6%,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가재정의 증가율인 3.58%, 0.4%에 비하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국가재정에서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그림2〉





〈표1〉 2015~2017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 총액

(단위: 천 원)

지자체명	2015년 장애인예산총액	2016년 장애인예산총액	2017년 장애인예산총액	자치단체별 장애인인구수	1인당 예산액
서울	755,595,988	805,749,685	843,912,223	391,027	2158
부산	277,957,210	281,484,344	290,913,559	168,950	1722
대구	211,748,717	234,524,864	245,575,434	117,111	2097
인천	185,467,342	166,430,280	180,901,084	135,623	1334
광주	163,613,779	172,323,044	176,624,368	68,569	2576
대전	159,503,140	177,499,218	182,445,680	71,425	2554
울산	78,819,326	91,386,638	87,049,065	49,533	1757
세종	22,248,524	18,730,421	24,308,792	9,845	2469
경기	419,536,960	446,915,144	496,602,597	522,437	951
강원	104,497,819	103,816,088	105,270,053	98,928	1064
충북	109,081,956	118,179,290	133,390,721	94,688	1409
충남	137,508,820	150,543,465	162,640,057	126,406	1287
전북	163,320,945	154,975,334	157,417,827	130,345	1208
전남	140,315,351	163,714,026	151,323,873	141,578	1069
경북	179,358,075	201,102,452	201,282,999	169,643	1187
경남	191,441,321	188,703,000	188,550,192	180,665	1044
제주	94,722,033	113,746,278	47,302,655	34,278	1380
합계	3,394,737,306	3,589,823,571	3,675,511,179	2,511,051	1464

### 3.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의 한계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장애인예산 총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이며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총액은 당해 지역의 장애인 인구수와 장애인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에 비례하며, 복지 인프라의 성격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인구수로 평가한 1인당 장애예산액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광주, 대전, 세종의 순이며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난 것은 경기이다. 경기의 경우 서울에 비해 장애인예산의 규모가 60%에 불과한 반면 등록 장애인 인구수는 서울의 1.3배를 넘기 때문에, 1인당 장애인예산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거주 지역에 따라 장애정책이나 장애인관련 인프라 구축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체는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의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로하는 투표(vote by foot)”를 통해 많은 주민을 자신의 구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즉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방 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방공공재를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재의 적정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의 최약자, 빈곤층인 장애인들이 보다 차별화되고 다양한 장애정책, 편리하고 풍부한 장애친화적 인프라를 위해 스스로의 선호에 따라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의 취지와 가치는 추구하되 기본적인 장애 인프라 구축,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

〈표2〉 2017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 비율

(단위: 천 원)

지자체명	전체 예산총액	장애인예산총액	비율
서울	29,801,117,123	843,912,223	2.83%
부산	10,091,139,162	290,913,559	2.88%
대구	7,085,800,000	245,575,434	3.47%
인천	8,316,641,730	180,901,084	2.18%
광주	4,039,753,650	176,624,368	4.37%
대전	3,710,181,000	182,445,680	4.92%
울산	3,247,105,325	87,049,065	2.68%
세종	1,242,038,463	24,308,792	1.96%
경기	19,670,270,073	496,602,597	2.52%
강원	4,712,407,000	105,270,053	2.23%
충북	3,868,481,787	133,390,721	3.45%
충남	5,172,467,000	162,640,057	3.14%
전북	5,158,524,783	157,417,827	3.05%
전남	6,373,508,634	151,323,873	2.37%
경북	7,437,866,000	201,282,999	2.71%
경남	6,957,853,927	188,550,192	2.71%
제주	4,449,307,793	47,302,655	1.06%
합계	131,334,463,450	3,675,511,179	2.80%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당해 지자체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지자체 예산총액 대비 장애인 예산총액 비율은 대전, 광주가 각각 4.92%, 4.37%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제주, 세종은 각각 1.06%, 1.96%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음 <표3>은 17개 광역시도의 장애인 예산과 장애인 담당부서의 장애인 예산을 비교한 것이다. 광역시도의 경우 대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과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 업무를 분담하거나 노인장애인과로 부서가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 광역시도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담당부서에 대부분의 장애인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7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 전남의 경우 각각 91%, 90%의 비율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지역의 장애인 정책이 선별적 수혜 중심의 특별정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일반정책에서 장애인들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을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표3> 2017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 총액

(단위: 천 원)

지자체명	장애인예산 총액(A)	장애인 담당부서예산 (B)	비율(B/A)	장애인 담당부서명
서울	843,912,223	689,434,228	82%	복지본부
부산	290,913,559	243,728,187	84%	장애인복지과
대구	245,575,434	194,878,019	79%	장애인복지과
인천	180,901,084	153,664,070	85%	장애인복지과
광주	176,624,368	140,640,616	80%	장애인복지과
대전	182,445,680	149,331,696	82%	장애인복지과
울산	87,049,065	76,826,264	88%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종	24,308,792	17,886,181	74%	노인보건장애인과
경기	496,602,597	288,910,055	58%	장애인복지과
강원	105,270,053	95,271,350	91%	경로장애인과
충북	133,390,721	105,165,631	79%	노인장애인과
충남	162,640,057	133,623,705	82%	장애인복지과
전북	157,417,827	133,418,748	85%	노인장애인복지과
전남	151,323,873	136,752,110	90%	노인장애인과
경북	201,282,999	175,455,009	87%	장애인복지과
경남	188,550,192	164,650,985	87%	장애인복지과
제주	47,302,655	17,804,283	38%	노인장애인복지과
합계	3,675,511,179	2,917,441,137	79%	

#### 4.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

2017년 장애인정책예산 모니터링 과정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을 분석하여 장애인 정책예산 편성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장애인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특정 부서에 집중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강력한 주창자나 이익집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의 무력한 타자로 머물고 있음을 뜻한다. 향후에도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나 리더십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정책이 최소한도로 집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더욱 심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예산이 복지예산에만 치중되어 있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정책은 복지의 차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차원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복지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이를 통한 지위 향상, 진정한 독립과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장애인 정책 예산의 규모를 확충하는 것 못지않게 이러한 인식과 우선순위의 재조정 역시 발전적인 장애인정책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 아시아 태평양 여성인권 운동 속으로, 장애여성 리더들 모이다.

### 제3차 아시아 태평양 페미니스트 포럼 참가 후기

글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난 9월 7~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제3차 아시아 태평양 페미니스트 포럼(Asia Pacific Feminist Forum : APFF)이 열렸다. 아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 활동가, 학자, 법률가 350여 명이 모인 자리였다. 이 자리는 아태지역 군국주의, 근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탓에 강화된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의한 여성 인권 탄압의 현실을 고발하는 성토장이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분노, 희망 및 행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3일 동안 계속된 포럼에서 가부장제, 억압, 성폭력 및 가정 폭력, 불공정하고 불공평 한 직장, 이주 여성의 처우, 성별



우리나라 장애여성들을 비롯하여 아태지역 여성 인권 관계자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아시아 태평양 페미니스트 포럼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렸다.



아시아태평양 장애여성 대표단 그룹.

및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주의, 장애인 및 원주민 여성 차별, 여성의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아태지역 여성 활동가들의 '분노'의 증언들이 쏟아졌다.

## 아시아 태평양 여성, 법과 개발(APWLD)

이 포럼을 주도한 아시아 태평양 여성 및 법과 개발(Asia Pacific Women, Law and Development(APWLD))은 아태지역 페미니스트 조직들의 네트워크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풀뿌리 활동가 2백여 명이 넘는 회원들은 아시아 태평양 26개국의 다양한 여성 그룹을 대표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에이피더블류엘디(APWLD)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의 인권 및 개발 정의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고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으로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와 협의 자격을 갖추고 여성 인권을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 연대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지난 2011년, 제1차 아시아태평양 페미니스트 포럼 개최 이래, 에이피더블류엘디(APWLD)는 주 사무국이 있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매 3년마다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 포럼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여성 주의자들은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재조명하고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경제, 사회 및 정치 체제를 해체하려는 여성들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자리로 포럼을 개최해 왔다. 포럼은 여성 활동가들의 자원 공유, 권익옹호를 위한 공간 제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이다. 무엇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독재적이고 가부장적인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서 여성들의 힘을 키우는 장이 되고 있다.

## 아시아 태평양 여성들의 상처, 그 목소리

포럼은 아시아 태평양의 여성들의 여성으로서의 고단한 삶의 목소리들로 구성되었다. 그 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피지 여성 권리 운동 (Fiji Women 's Rights Movement)의 날리니 싱 (Nalini Singh)은 살아남기 위해 시민 사회와 여성 인권 옹호자 (WHRDs)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개발 정책에 저항하고 여성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주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현실을 전했다.



한국의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와 티카 네팔장애인연합 회장.

태국계 레즈비언 인권 변호인,

성 평등 옹호론자인 마초포닌(Matcha Phorn-In)은 국적을 가진 원주민 소수 민족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상산 아나 콧 야와 촌 (Sangsas Anakot Yawachon)을 창립하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소수민족 청소년들의 인권을 역설했다. 필리핀의 탕공바이 (Tanggol Bayi) 코디네이터 인 제로펠 씨를러(Gerifel Cerillo)는 시장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의 가난한 여성들의 상황을 공유하였다.

대만의 결혼 이민자들의 투쟁과 적극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대만의 트랜스아시아 자매연합 (TransAsia Sisters Association:TASAT)의 수석 회원 인 쑤 잉 리엥(Tsu-ying Liang)은 대만의 이주한 기혼 여성들이 직면 한 주요 문제와 도전에 관해 이슈를, 파키스탄의 페미니스트이자 인권 운동가 인 사라 자만 (Sarah Zaman)은 파키스탄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서의 성 평등 문제와 광범위한 개발 사안에 대해 나누었다.

키르기스스탄 농촌 여성 단체인 SHAZET의 아이즈 하말 바카 쇼바(Aizhamal Bakashova)는 여성과 소녀들의 신체적 완전성과 파트너 선택, 자유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유를 침해하는 신부 납치에 대해 성토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소수 민족 원주민인 푸 농(Pu Nong) 종족인 찬미 옴(Channy Yeam)수력 발전 댐과 같은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과 원주민 공동체의 삶에 끼치는 비참한 영향을 공유하였다.

그녀들은 발언, 워크숍, 공연, 노래와 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여성으로 살아가는 처절한 삶을 나누고 분노하고 치유하고 다시 희망으로 엮어갔다.



## 여성들의 치유, 희망

포럼의 마지막 날은 아태지역 여성들의 치유와 희망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여성들의 세계를 변화시킨 운동, 캠페인 및 연대 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이 날, 주 연설자였던 APWLD(에이피더블유엘디)의 대표인 캐이트 라핀(Kate Lappin)은 "가부장제는 여자는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여성 운동은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고 불의에 처해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한다. 궁극적인 연대는 용감한 행동에서 나온다. 사랑은 우리가 연대하여 행동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더 큰 공동선을 위해 용감한 사람들이 행동을 취할 때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 분노와 희망을 우리의 행동으로

이번 포럼에 모인 아태지역 여성 인권 활동가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희망을 품고, 이를 공동선을 이루는 여성들의 연대 행동으로 여성인권을 바꾸는 힘으로 모아가기로 하였다. 하나 된 아태지역의 자매들은 연대, 파업, 소송, 저항, 단결과 인권 운동을 연결하는 행동을 구상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캄보디아 여성 활동가, 찬니 옴(Channy Yeom)은 "제3차 페미니스트 포럼 2017은 저에게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국제 회의였습니다. 이번 참가를 통해 각 국가의 지역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들을 직접 전해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공 받았을 뿐 아니라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매들을 만났고 내 지식과 이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가부장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네트워크와 동맹 관계를 구축 할 것입니다."라고 포럼 참가 소감과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 페미니스트 포럼, 다양성의 꽃, 아태장애여성 리더들의 목소리.

그러나 무엇보다 이 포럼이 소중한 것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장애여성 운동의 여성운동의 주류화를 구성하고 장애가 여성의 이슈이며 장애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어찌면 당연한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녹여진 기회여서 더욱 그러했다.

이번 포럼에는 에이피더블류엘디(APWLD)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 등에서 20여명의 장애여성 리더들과 관계자들이 아태장애여성연합(Asia Pacific Women with Disabilities United)이란 이름 아래 모였다. 이 연합은 지난 2011년, 제1차 아시아태평양 페미니스트 포럼의 장애여성 라운드 테이블에서부터 시작되어 6년이란 시간 속에서 성장해 온 그룹이다. 필자는 아태장애여성연합의 설립자 중 한 명이다.

아시아의 페미니스트 포럼의 참가를 통해 아태지역 장애여성들은 당면한 인권과 차별의 현실의 어려움을 나누고 장애여성들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여성 운동과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였던 “분노, 희망, 행동”에 장애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왜 아태지역의 여성인권 활동으로서 장애여성 인권이 지지를 받아야 하는가?”란 주제로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페미니스트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왜 여성 개발 분야에서 장애여성에게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의 장애여성 워크숍 전경

아시아태평양은 60여개가 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종교, 국가의 형태 그리고 민족 등 다양하고 복잡하다. 가부장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종교와 관습에 의한 소녀와 여성들의 억압과 구속, 급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민족분쟁과 재난으로 인한 빈곤과 위협. 아시아태평양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는 너무 많았다. 그러나 그녀들은 아름답고 강하고 유쾌하고 희망적이었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그 어느 여성들보다 강인하고 삶에 적극적이었다. 이번 포럼은 장애를 가진 아시아 여성으로서 그녀들과 함께 동시대에 여성의 인권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동료로서 배우고 나누면서 힘을 얻는 귀한 기회였다.

## 장애인은 고속버스를 탈 수 없다?

글 황은영 활동가

대학졸업 후 회사에서 총무직, 경리, 편집디자인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당진 II센터에서 일반형 일자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II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었던 황당한 에피소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등포 II대학을 가기 위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7시에 고속버스를 타는데, 그 날은 II대학에서 첫 번째 야유회가 있는 날로 새벽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합덕터미널에 도착하여 표를 끊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시가 채 되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기 위해 출입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사는 문을 살짝 열어 보이더니 아무런 말없이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문을 닫고 바로 후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진하고 나서 나를 태우려나?’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후진이 끝나고 나서 버스를 타려고 다가가는데 기사는 운전석 창문을 살짝 열면서 “일행 있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라고 대답하니 말 끝나기가 무섭게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멍해지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승차거부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야간 택시 승차거부는 당해봤어도 고속버스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행이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못타는 법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치밀어오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생각해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먼저 터미널 버스표를 반환하기 위해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매표소직원은 저를 알아보았는지, 아직 버스를 안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고속회사에 전화를 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버스표는 승인 취소가 되었고 주차된 제 차를 탔습니다. 오늘 하루를 쉬어야하나 그냥 다음 차를 타야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첫 야유회인데 빠지면 안 되겠지’ 하는 생

각이 들어서 다시 매표소로 가서 다음 버스표를 끊고 집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같이 서울로 가려던 아는 분이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버스 차량번호를 사



한양고속 승차 거부 차량

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한양고속, 여러 인권센터 등 이 곳 저 곳으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라서인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계속 드는 답답한 마음에 인권위원회, 시청, 도청 홈페이지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그 분께 전해들은 바로는, 버스가 속도를 내며 도로를 좌우로 다니다가 끝내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타고 있던 승객들이 운전을 그렇게 하나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기사는 서울남부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내려서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탑승했던 승객들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며 운전자를 찾으려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월요일에 해당 버스회사에 전화를 해서 운전기사의 진정한 사과와 낭비된 시간과 돈 낭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기사는 최근 몇 건의 민원접수가 되어 한꺼번에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요일이 되어 서울로 와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님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려야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후 인권위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기사는 교육도 받고 해당 버스회사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있으니 곧 합당한 징계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기사와 합의를 하는 것은 어떤지 제게 물었습니다. 웬지 합의를 하라고 유도하

는 것 같아서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일의 진행에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죄송하다는 말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급히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분과 싸우다시피 언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발방지와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두 달 정도 지났을까요? 인권위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 받으셨나요?”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라고 답했더니, 그 기사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버스 운전사 자격에서도 재명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한다고 제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알려줘도 되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요. 어차피 해결 됐으니 제 연락처를 알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걸 배웠습니다. 장애인으로서의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스기사의 부당한 행태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시청이나 도청의 홈페이지는 억울한 마음을 알리는 창구의 역할만 할 뿐, 해결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저는 좌절하지 않고 국민신문고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언제든 두드릴 것입니다.

## “장애인 당사자로서 바란다.”

장애인이기에 무시당하고, 장애인이기에 승차거부 당하고, 장애인이기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모든 사회편의 시설과 문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사회고 국가일까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을까요? 장애인 자신도 인지를 하고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사회와 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우리 장애인 당사자는 꾸준한 장애인식 개

선 교육과 인권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권리와 의무를 갖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습에 경로사상이 있어 사회전반적인 것들은 어르신 먼저라고 생각하며 장애인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약자보다 장애인이 더 이동하기 힘들데 말입니다. 어느 누가 먼저가 아닌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모든 사회적 약자가 함께하는 복지를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복지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설에서도 보다시피 장애인이 편하면 노약자, 임산부, 아동 등 비장애인도 편해진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 아실 겁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주고,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해주고, 더 나아가 모두가 편한 장애인 복지정책 확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늘려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도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제공이 상대적으로 적고, 편견이나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좌절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사회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여야 사회가 전체가 풍족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행복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친밀함 속에 포착된 극적인 순간들 안나 자메츠카 감독의 <성찬식>

글 류미래 푸른영상 다큐멘터리 감독

해마다 가을이 되면 반가운 영화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DMZ다큐멘터리영화제인데요 최신 다큐멘터리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보물 같은 영화제입니다. 올해에는 9월 21일부터 8일간 42개국에서 온 114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 소개할 영화는 올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흰기러기상을 수상한 <성찬식>입니다. 흰기러기상은 국제경쟁 부문에 상영된 전 세계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작품 중에서 평화, 소통, 생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최우수 작품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폐막식 다음 날 수상작들을 모아 상영 해 주길래 별 정보 없이 보다 보니 <성찬식>에는 자폐성 장애인이 등장하더군요.

<성찬식>의 주인공은 14살 올라입니다. 올라는 무능한 아빠, 자폐성 장애가 있는 남동생 니코렘과 함께 살고 있고 엄마와는 가끔 전화통화만을 할 뿐입니다. 동생의 성찬식을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올라는 함께 모여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성찬식은 가톨릭교 신자가 첫 영성체를 하는 의식입니다. 중요 교리를 열심히 익혀 신부님의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에야 참여할 수 있는, 꽤 어려운 관문입니다. 영화





의 배경은 폴란드인데 가톨릭교 신자가 95% 이상인 폴란드에서는 첫 영성체를 하는 성찬식이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화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동생 니코렘의 성장을 의미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다큐멘터리에서는 축이 중요합니다. 기차(Train)이라고도 부르는 이 축은 영화 전체를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성찬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그 축이 됩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니코렘의 특성, 올라의 고군분투, 아빠의 무능,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 등이 다채롭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중요하고 니코렘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니코렘이 신부님의 교리문답을 잘 통과할 수 있었을까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장애유형만으로 이해하고 동질적인 집단의 특성으로 단정 짓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지요. 지적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한 사람의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 전부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만큼 발달장애인들의 장애특성은 다양합니다. 니코렘은 자폐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누나 올라가 니코렘에게 교리문답 내용을 계속 외우게 하는 겁니다.

니코렘이 누나 올라의 말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펼쳐 보이는 시간은 성찬식을 앞둔 몇 개월일 뿐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올라와 니코렘의 평생의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올라는 14살 소녀 치고는 참 참을성이 많긴 하지만 그 나이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짜증도 냅니다. 그러면 니코렘은 누나의 눈치를 살피며 말썸도 잠시 멈춥니다. 그건 올라만이 니코렘을 상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라와 아빠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 점은 잘 드러나는데요. 어느 날 올라는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도 니코렘한테 뭐 좀 시키라고. 아빠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니코렘은 네 말만 듣잖아.”



니코렘이 누나 말만 들을 리는 없겠지요. 단지 올라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니코렘을 돌봐왔으니 가장 친밀한 존재인 거고 상대적으로 아빠나 엄마와는 관계형성이 안되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코렘이 올라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니코렘과 소통하는 사람이 오로지 올라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영화의 종착지는 성찬식입니다. 니코렘이 교리문답을 잘 익혀서 성찬식에 참여하는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엄마가 성찬식에 참여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성찬식을 계기로 올라의 희망대로 온 가족이 결합할 것인가가 이 영화의 종착지인 셈인데요. 일단 니코렘은 교리문답을 잘 통과합니다. 신부님과 교리문답 장면은 살짝 놀랍습니다. 교리문답의 내용이 엄청 깊고 구체적인 신부님의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는 니코렘의 모습을 보다 보면 올라가 얼마나 애를 썼을지, 니코렘은 또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가 그려지거든요.

엄마도 옵니다. 성찬식 전까지 엄마는 전화통화로만 등장합니다. 올라와 엄마의 통화는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다는 것, 아주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 결혼생활도 그다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 등등을 전화통화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성찬식에 모습을 드러낼 뿐 아니라 올라가 원하는 대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이제 소녀가장인 올라의 짐은 가벼워지고 영화는 행복하게 끝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삶은 14살 올라의 소망과는 달리 단순하지가 않더군요. 엄마가 돌아오면 올라의 짐이 가벼워지고 또래 친구들과처럼 아이답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왔어도 올라의 처지는 별로 변하지 않더군요. 엄마와 니코렘 사이에 애착관계는 별로 없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이가 있어서 올라가 틈틈이 돌보기도 하더군요. 무능하고 철없는 아빠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던 일상이 깨져버린 것에 대해 불평할 뿐입니다. '가족의 화합'이라는 단어와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풍경이 펼쳐지더니 극적으로 돌아왔던 엄마는 다시 한 번 극적으로 올라의 기대, 더 나아가 가족의 기대를 다 깨버리고 다시 떠납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성찬식>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동일하게 니코렘이 바지를 입는 상황입니다. 첫 장면에



서 니코렘은 허리띠를 제대로 매지 못합니다. 거꾸로 매기도 하고 구멍을 빠뜨리기도 해서 자꾸자꾸 실패하며 스스로를 한심해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니코렘은 바지를 입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허



리띠를 아주 능숙하게 잘 맵니다. 극적인 해결도 없이 행복한 결말도 없이 영화는 무심하게 끝나버렸지만 니코렘의 성장은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영화제에서 만난 이 영화의 연출자 안나 자메츠키 감독은 무척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줄거리만으로 봤을 때에는 다소 허무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영화는 굉장히 섬세하고 사려 깊습니다. 감독이 인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은 덕분에 극적인 순간들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 영화입니다. 연출자는 거의 개입하지 않는 가운데 인물에 밀착한 신중한 촬영과 극영화에 가까운 숙련된 편집으로 영화는 빼어난 완성도를 선보입니다. 2016년 로카르노영화제 비평가주간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이래 지난해 유럽에서 많은 호평을 받은 화제의 다큐멘터리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친구들과 놀던 올라의 들뜬 표정이 자꾸 생각나더군요.

어른들이 무능하면 아이들은 일찍 어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지요. 무능한 아빠, 자기의 사랑이 더 중요한 엄마를 둔 올라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생과 보내는 시간은 분명 아주 특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는 영화제 기간 외에도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아카이브'를 상시 운영합니다. 올해 영화라 아직 <성찬식>이 아카이브에 등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열심히 두드리고 요청해서 꼭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DMZ국제다큐영화제 콘텐츠교육지원팀 031-936-7379)

# 포럼은 지금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지난 10월 17일 이룸센터에서 국회의원 천정배, 김영진, 윤소하, 기동민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DPI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정신장애연대가 주관하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함술이, 남원 평화의집 원장 강현석,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인환, 심리학박사 배정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상임팀장 김경애가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12월 8일(금)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이룸센터에서 통합결과보고대회를 진행하였다. 국회의원 기동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정신장애인지립생활센터,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였다. 토론자로는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신영전 교수, 한국정신장애인지립생활센터 송승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마인트포스트 박종언 데스크기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황성룡 사무관이 함께하였다.

## 포럼은 지금



12월 14일(목) 정신장애인일상생활차별모니터링사업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각 단체 올해 사업에 대한 공유 및 평가와 내년도 연대 사업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시간으로, 토론회의 주제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다.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함솔이 연구원, 한국정신장애인지립생활센터 유동현 사무국장,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인영 팀장,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유진 팀장, 박종언 기자가 함께하였다.



# 포럼은 지금

## (사)서울장애인인권포럼



10월 19일(목) 서울장애인인권포럼의 주최로 “서울시 장애인자립 기본구상안 도입의 타당성 및 시범사업방안-장애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렸다.



10월 26일(목)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및 욕구분석과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모델 개발 용역으로 제2 과제 양천구 여가프로그램(영화관람)을 진행하였다. 장소는 목동CGV였으며 '대장 김창수'를 상영하였다.

# 포럼은 지금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9월 5일(화) 국회의원 김영진, 김영호, 이종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DPI,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기업재난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하여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10월 24일(화)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ALS사회적협동조합(준)이 공동 주최하여 “ALS(루게릭)장애인 지원정책 개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포럼은 지금



11월 22일(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연합뉴스TV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주관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2차 본선 심사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하였다.



#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웹와치 주요 사업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 지역모니터링센터

서울 (대표 이권희)	T. 02-833-9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4층
부산 (대표 김호상)	T. 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 2층
광주 (대표 김 랑)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7
대전 (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 동진프라자 332호
울산 (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73 세한빌딩 5층
경기 (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충남 (대표 황영란)	T. 041-631-069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47번길 새아스프라자 501호
전북 (대표 김미아)	T. 063-228-198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만내4길 6-23
경북 (대표 정현수)	T. 054-701-2088	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165-4 101호
경남 (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303호
제주 (대표 고현수)	T. 064-751-80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201호